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58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5개 법률을 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2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야채”를 “채소”로, “속행”을 “계속 진행”으로 바꾸는 등 일본식 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5개 법률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동 4층

○ 전화 : 043-719-1535, 팩스 : 043-719-1500

이메일 : kangyj2000@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5개 법률 일부개정안

제1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9호 중 “부착한”을 “붙인”으로 한다.

제2조(「식품안전기본법」의 개정)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판명된”을 “밝혀진”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함유한”을 “포함한”으로 한다.

제3조(「식품위생법」의 개정)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제9호 중 “부착한”을 “붙인”으로 한다.

제93조제1항제3호 중 “가금”을 “조류”로 한다.

제6조제1호, 제6조제2호 및 제15조제1항 중 “함유된”, “함유한”, “함유된”을 각각 “포함된”, “포함한”, “포함된”으로 한다.

제4조(「약사법」의 개정)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의2 본문 중 “속행(續行)”을 “계속 진행”으로 한다.

제86조의5제2항제2호 중 “판명되어”를 “밝혀져”로 한다.

제72조제3항제1호, 제72조제3항제2호 및 제72조제3항제3호 중 “동등”을 각각 “같은 수준”으로 한다.

제50조의6제3항제10호 중 “판명된”을 “밝혀진”으로 한다.

제83조의5제3항 후단 및 제83조의6제3항 후단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5조(「위생용품 관리법」의 개정)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1) 중 “야채”를 “채소”로 한다.

부 칙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벌칙) (생 략) 1. ~ 8. (생 략) 9.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 무원이 <u>부착한</u> 게시문 또는 봉 인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 상시킨 자	제43조(벌칙) (현행과 같음) 1. ~ 8. (현행과 같음) 9. ----- ----- <u>불인</u> ----- ----- -----

신·구조문대비표

– 6 –

(생 략)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법령등을 위반한 것으로 <u>판명된</u> 경우 해당식품 등 및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공개할 수 있다. ④ ~ ⑤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 ----- --- <u>밝혀진</u> ----- ----- ----- ----- -----. ④ ~ ⑤ (현행과 같음)
---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기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생략)	제6조(기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현행과 같음)
1.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u>함유한</u>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	1. ----- ----- ----- ---- <u>포함한</u> ----- -----
2. 제1호에 따른 식품 첨가물이 <u>함유된</u>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2. ----- <u>포함된</u> ----- ----- ----- -----
제15조(위해평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u>함유된</u>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등이 제4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식품등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식품등의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그것이 위해식품등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위해평가) ① ----- ----- ----- <u>포함된</u> ----- ----- ----- ----- ----- ----- ----- -----.

② ~ ⑥ (생 략) 제93조(벌칙) ① (생 략) 1. ~ 2. (생 략) 3. <u>가금</u> 인플루엔자 ② ~ ④ (생 략) 제97조(벌칙) (생 략) 1. ~ 8. (생 략) 9. 제79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u>부착한</u> 봉인 또는 게시문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시킨 자 10.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93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u>조류</u>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7조(벌칙) (현행과 같음) 1. ~ 8. (현행과 같음) 9. ----- --- <u>붙인</u> ----- ----- ----- 10. (현행과 같음)
---	--

약사법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0조의6(판매금지 등) ① ~ ② (생략) ③ (생략) 1. ~ 9. (생략) 10.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판매금지를 신청한 것으로 <u>판명</u> <u>된 날</u> ④ (생략)	제50조의6(판매금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10. ----- ----- <u>밝혀</u> <u>진</u> - ④ (현행과 같음)
제72조(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① ~ ③ (생략) 1. 방송, 일간신문 또는 이와 <u>동</u> <u>등</u> 이상의 대중매체 2. 의학·약학 전문지 또는 이와 <u>동등</u> 이상의 매체 3. 자사(自社) 홈페이지 또는 이 와 <u>동등</u> 이상의 매체 ④ (생략)	제72조(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① ~ ③ (현행과 같음) 1. ----- <u>같</u> <u>은 수준</u> ----- 2. ----- <u>같은 수준</u> ----- 3. ----- - <u>같은 수준</u> ----- ④ (현행과 같음)
제83조의6(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의 구축·운영 등) ① ~ ② (생략) 1. ~ 3. (생략)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에 필요	제83조의6(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의 구축·운영 등) ① ~ ② (현행 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③ ----- -----

한 업무를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6조의5(피해구제급여의 지급 중단 결정 및 부당이득의 징수 등) ① ~ ② (생략)

1. (생략)
2. 피해구제급여를 받은 이후 의료사고로 판명되어 조정·중재를 받은 경우

3. (생략)

③ (생략)

제89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89조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종전의 제조업자등과 수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

----- 필요한 -----

-----.

제86조의5(피해구제급여의 지급 중단 결정 및 부당이득의 징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밝혀져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89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u>속행(續行)</u>할 수 있다.	----- ----- <u>계</u> <u>속 진행</u> ----.
--	---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1. (생 략) 가. (생 략) 1) <u>야채</u> , 과일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製劑)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1) <u>채소</u> , ----- -----